

Ⅱ. 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동의안

□ 제안이유

: 1998년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금 : 127,268천원
(일반보상 37,736원×22일×0.7(과실 30%인정)×219.6)
- 기 지급된 금액 : 61,624천원
 - 근로기준법상 보상액 : 28,623천원
 - 조의금 : 18,960천원
 - 장례비 : 14,041천원
- 금회 보상금 지급액 : 65,644천원

□ 검토내용

- 지난 3월 29일 법원읍 법원리 산108번지 일원에서 산불진화중 순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, 4월 3일 제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됨에 따라

- 금번에 동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와 부합되게 지급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나
- 동 조례가 '98. 4. 3일 의결되었음에도 5월 25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, 심의·의결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득하여 유족들에게 지급코자 하는 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에는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기에 집행치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
- 또한,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하는데 있어 동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민법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우선 자금집행후 익년도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득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파주시산불진화중순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동 보상금의 지급후 동 조례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폐지되는 한시조례임을 보고 드림.

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

□ 95년도

위 반 내 용	법 적 근 거	부과액(원)	건수(건)	비고
계		11,700,000	81	
안전관리규정 미준수	액법 제10조제5항	3,000,000	30	
자체검사이필	액법 제11조제1,2항	100,000	1	
안전관리자 미상주	액법 제14조제3항	2,100,000	7	
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실효	고법 제25조제1항 액법 제33조제1항	3,500,000	13	
판매대장등 용기번호 미기록	고법 제13조제3항 액법 제12조제3항	2,700,000	27	
가스용기관리 부적정	고법 제13조제4항	200,000	2	
가스사용시설기준 부적합	액법 제29조제3항	100,000	1	

□ 96년도

위 반 내 용	법 적 근 거	부과액(원)	건수(건)	비고
계		8,000,000	40	
안전관리규정 미준수	액법 제10조제5항	1,700,000	17	
안전관리자 미상주	액법 제14조제3항	900,000	3	
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실효	고법 제25조제1항 액법 제33조제1항	2,100,000	7	
판매대장등 용기번호 미기록	고법 제13조제3항 액법 제12조제3항	800,000	8	
공급규정 미게시	액법 제28조	200,000	2	
가스시설관리 부적정	액법 제12조제4항	300,000	1	
도시가스공사계획신고 미필	도법 제11조제2항	2,000,000	2	

□ 97년도

위 반 내 용	법 적 근 거	부과액(원)	건수(건)	비고
계		2,500,000	4	
도시가스공사계획신고 미필	도법 제11조제2항	1,000,000	1	
시공사 미등록 시공	액법 제15조의2	1,500,000	3	

□ 98년도

(‘98. 5. 31까지)

위 반 내 용	법 적 근 거	부과액(원)	건수(건)	비고
계		300,000	1	
안전관리자 미상주	액법 제14조제3항	300,000	1	